

2022년 울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 목 적

- 농작업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처리절차 : 희망자 신청(5월~6월) → 대상자 확정(7월말)
→ 농협은행에서 자부담 납부 후 카드신청·발급(9월중)
- 신청기간/접수처 : 5. 11. ~ 6. 30.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액 : 20만원 충전 된 카드발급(※ 자부담 20%(4만원) 있음)
- 카드발급/사용기한 : 9월중 / 12. 31.까지 사용
- 신청대상 (①부터 ⑤까지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별표1,2,3,4 참고)
 - ① 울산 농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하는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53. 1. 1. ~ '02. 12. 31. 출생자) 여성농업인***
 - *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 ** 농어촌 정비법 제2조
 - *** 농업인 여부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자(신청일 현재 기준),
공익직불금수령 등 확인
 - ② 전업농가의 여성농업인(건강보험 직장가입자·농림축산업 외 타 직종 종사자 제외)
 - 부부 모두 전업농업인이어야 함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되나, 단, 자녀 등으로 본인 및 배우자가 직장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된 경우는 제외)

-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농림축산업 외 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여부), 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
- 본인 및 배우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총액)이 3,700만원 이하*인 자
 - * 일반사업자(임대사업 등)로 농업외 소득이 3천7백만원 이하인 자

③ 농업경영체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의 농업인으로 등록된 사람

④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 제외

- 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선정자, 효도이용권, 저소득층 복지카드 등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사립교직원, 농·축·수·산림조합 등 금융기관 임직원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선정자, 효도이용권, 저소득층 복지카드 등
 - * 사회보장제도 협의 시 유사복지제도 중복 시 미지급

⑤ 농가당 1인만 신청 가능(농가 내 중복지원 불가)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세대주명, 주소)을 통해 농가당 1인 신청 여부 확인
- ⇒ 사업 중간점검결과 사업 자격요건 미비 확인 시 사업비 전액 환수

○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본인신청, 위임시 배우자 및 직계만 가능)
- ②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일시적 3개월 미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구비
- ④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 ※ '21년 공익형(소농)직불제 지급대상자일 경우 구비서류는 생략 가능

□ 카드발급 및 사용 [여성농업인 → 지역농협] : '22. 9월 이후

○ 여성농업인 지원대상자는 신분증과 자부담금(4만원) 지참하고 NH 지역농협은행을 방문하여 행복카드 발급 요청

○ 사용범위 : 제한업종 및 사용업종 ※ 참고 1-2

- 건강식품·의료기기, 한약방, 안경점 등 보건분야

- 미용실, 미용용품, 영화관, 공영(전시)장, 놀이공원, 도서구입 등

- 스포츠센터, 운송업(고속버스 등), 관광업(여행사, 민박 등) 등

※ 제한업종 : 의료분야,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 기타 사용 제한이 필요한 업종

○ 카드사용 안내

- 카드 도난·분실 시, 재발급 가능

(※ 단, 신고지연에 따른 분실카드 사용피해는 보상하지 않음)

- 유효기간(카드발급일 ~ 2022. 12. 31.) 내 미사용 시, 연장 사용 불가

- 카드사용 내역 문자전송서비스(SMS) 기능 제공

- 자부담 우선 사용 원칙에 따라 정산

* 카드잔액 확인(농협 1588-2100(서비스 코드 491)

○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229-6971), 북구청 농수산과(☎ 241-8053)

- 농소3동행정복지센터(☎ 241-6270)

- 붙임 1. <별표1> 대상기준 및 주요내용(요약)
2. <별표2> 농촌 및 준농어촌지역 기준
3. <별표3> 농업 및 농업인의 범위
4. <별표4>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
5. <별지 1호 서식>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 신청서
6. <참고1> 2022년 울산광역시 행복카드 사용 제외 업종표
7. <참고2>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업종표
8. <참고3> 구비서류 확인요령 / 민원인
9. <참고6> 농업 업종 코드번호

< 별표1 >대상기준 및 주요내용(요약)

구 분	대상자 검토 기준	확인 및 관계 규정
○ 신청자 지원대상 (여성농업인)	만20세 이상 ~ 만70세 이하 <1953. 1. 1. ~ 2002. 12. 31> 출생자 신청일 기준(경영체 등록 확인)	주민등록 기준 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의 농업인으로 반드시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농촌 및 준농어촌 지역 거주자	울산광역시 농촌(읍·면) 및 자치구의(동)지역 중 준농어촌 지역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제3 조5호에 따른 농촌지역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준 농어촌 기준 적용
○ 여성 전업농	농업분야 종사 여부 부부 모두 전업농업인 경우에 한함.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농림축산업 외 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국세청업종 분류에 따른 농림축산업 종사 여부 확인)
○ 유사 복지카드 수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 및 [공 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 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사립교 직원, 농·축·수·산림조합 등 금융기관 임직원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문화누리 발급대상자	유사 복지제도 중복 확인
○ 농가당 1인 신청	농가내 중복지원 불가	주민등록 세대주, 주소 확인
○본인의 건강 보험 직장가입자	본인이 농한기 일시적(3개월 미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취업 제외	<u>농한기 3개월 미만 직장 가입자</u> <u>(재직증명서 확인 등)</u>
○소득 증명 및 소득 확인	전년도 기준 본인 및 배우자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자	공익(소농)직불금 대상자 경우 생략 가능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6조 기준 적용

< 별표2 > 농촌 및 준농어촌지역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따른 농촌지역」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 단서의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지원은 제27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6.2.3.>

1.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2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 별표3 > 농업 및 농업인의 범위

1. 농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 특용작물·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채취업	”

2. 농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 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4. < 별표4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

- [농식품부 고시 제2016-85호]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준용

농업인의 기준	확인 기준	확인 서류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경영주 외 농업인, 공동경영주	경영체 등록확인서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농지원부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서면계약서
	위의 사항 관련 각 농지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자	관련 서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계약 체결	서면계약서, 농산물 출하·판매 증명서 (영수증 등)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아래조건 모두충족) - 농업경영주와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함께 등록 - 영농사실 확인을 받은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 -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	서면계약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고용	농업관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어 고용계약을 체결한자 - 단 법인의 대표, 등기이사 제외	서면계약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고용		

<별지 1호 서식>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 신청서

신청자 (여성 농업인)	성명		주소 (우편번호)	(우 00000)	연락처 (전화)	
	주민등록번호		직업	* 농업외 직장이 있는 경우 제외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록 <input type="checkbox"/> 미등록 <input type="checkbox"/>	카드발급 농축협명	농협	지점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직업 * 농업외 직장이 있는 경우 제외	

*** 신청자 필수 체크 및 확인사항**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는 문화누리카드와 중복으로 지원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중복으로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및 2년간 지원 중단됨을 확인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동 시군청 N농협은행 중앙회·영업본부·사군 지부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 발급대상자 확정 및 관리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계좌번호, 건강보험, 농업경영체, 소득증명원, 공무원 또는 공공기업, 금융기관 가족, 가구주, 금융기관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 . 01. ~ 20 . 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조회·이용 등 활용과 「여성
농업인 바우처 카드」 발급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행정·농협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상기 본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여성농업인이며, 실제로 농업에 종사함을 확인함.

2022 . . .

여성농업인(신청인) :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소득확인 가능 서류)

* 전년도 공익형(소농)직불제 지급대상자일 경우 구비서류 생략.

읍 면 동 확 인 내 용 [✓]	확 인 자	
▪ 농촌 및 준농어촌 지역 거주 여부 : 거주(), 미거주()	담 당	직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등록(), 미등록()		성 명
▪ 본인 및 배우자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자: 공익() 해당(), 미해당()	담당자	직
▪ 중복 지원여부 : 해당(), 미해당() - 본인 및 배우자의 직장(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서 복지 서비스 - 문화누리 카드, 효도이용권		성 명
	최종지원 대상여부	지원(), 제외()

참고 1

2022년 울산광역시 행복카드 사용 제외 업종표

□ 사용제한 업종

1) 의료분야 업종

2)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

↳ 유흥(단란주점), 사행(카지노), 레저(골프), 위생(안마시술소), 사회통념상 제한이 필요한 기타 업종(총포류판매) 등

3) 기타 사용제한이 필요한 업종 등

↳ 각종 조세·용역서비스, 교육기관 등록금, 유학, 자산형성(금융, 보험, 차량, 귀금속), 상품권, 기타업종

↳ 자사카드 발행 가맹점, 달러결제 가맹점, 자동이체 등 회원의 별도 확인 없이 정기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가맹점, 카드사에서 승인불가로 선정한 일부 가맹점 등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제한사항	업종	업종코드	업종분야
각종 조세·용역 서비스	케이블 T V	8401	
	인터넷이용료	8402	
	공과금	8403	
	전화요금	8404	
	전기 수도	8405	
	관리비	8406	
	우체국(우편요금)	8407	
	국세	8408	
	국세(특수주기)	8409	
	지방세	8410	
	도시가스	8412	
	단체회비	8501	
	기부금	8502	
	기부금(본부정산용)	8503	
	부동산 중개업	8108	
부동산임대	8109		
기타 용역서비스	8199	심부름센터, 인력공급, 경호, 청소대행, 번역 및 통역, 대리 운전, 직업소개소 등 개인과외 등	
교육기관 등록금	용역서비스업	8101	
	국공립초,중,고 납입금 자동납부	7600	
	초 중 고등학교(자동납부제외)	7601	
	대학, 대학원(등록금)	7602	
	유치원/어린이집/놀이방	7603	
	유아전문 교육기관/놀이시설	7604	
	대학,대학교(비등록금)	7605	
유학원	8102		
자산형성	귀금속점	1202	금,은,보석등 (귀금속 및 시계류 복합판매점 포함)
	주택,건설	2707	아파트,콘도,연립주택,빌라 건설(리모델링, 개보수 포함) 및 분양금
	국산자동차판매점	5001	
	수입자동차판매점	5002	

제한사항	업종	업종코드	업종분야
	중고자동차판매점	5003	
	오토바이판매점	5004	
	생명보험	8001	
	손해보험	8002	
	기타보험	8099	
상품권	전자상거래상품권	4305	
	전자상거래PG상품권	4306	
	전자상거래오픈마켓상품권	4307	
	상품권	4505	
	농촌사랑상품권	4506	
	온누리상품권	4510	
	지자체발행상품권	4511	
기타*	다단계판매기타	4504	판매방식이 다단계판매인 업소(상품권, 유수수신 및 금융 피라미드 등의 비정상 다단계업체 제외)
	자동판매기 운영업	4508	일정한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각종 상품소매 운영업
	항공사	5601	국내,외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외국인전용점	5704	수입품판매점,외국인대상 판매점등
	면세점	5705	
	RF교통기관(수수료선취)	9101	RF 후불카드 사용처로 본회와 별도계약을 체결한 업체(KSCC, eB, 도로공사 등)
	RF교통기관(수수료후취)	9102	RF 후불카드 사용처로 본회와 별도계약을 체결한 업체(KSCC, eB, 도로공사 등)
	RF교통기관(대표가맹점)	9103	RF 후불카드 대표가맹점(정산용)
	후불하이패스	9104	후불하이패스 가맹점
	RF자동판매기(기기판매)	9202	RF 후불카드 사용처로 당사와 별도계약을 체결한 업체
	구매전용	9201	구매전용 가맹점 업종
	바우처(Voucher)	9204	
	바우처(가사간병)	9205	
	KB Houstar	9206	
	아이사랑어린이집	9207	
	내일배움카드 온라인	9208	
	물품대금(농협은행)	9209	
	물품대금(일반)	9210	
	아이행복유치원	9212	
	여신취급비용(법무사)	9213	
	여신취급비용(감정평가법인)	9214	
	KB부동산임대관리	9215	
	복지물	9301	
	현금영수증	9302	
	포인트승인신청	9303	
	구판매	9501	
	정산용가맹점	9901	
	정산용가맹점	9902	

제한사항	업종	업종코드	업종분야
	정산용업종(실적미반영)	9903	
	(상품권)정산용가맹점	9904	
제한사항	업종	업종코드	업종분야
유흥업종	단란주점	2901	
	유흥주점	2902	
	나이트클럽	2903	
	노래방	2904	
	당구장	6011	
	안마시술소	2905	
	유흥기타	2999	휴게텔, 전화방 등
레저업종 (사행업종)	골프장	6004	
	골프연습장	6005	
	총포류판매점	6003	
	외국인전용카지노	6015	
	비디오방/게임방	6104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4507	
위생업종	미용기타	7199	
의료분야	종합병원	7001	
	일반.치과.한방병원	7002	
	일반.치과.한의원	7003	
	건강진단센터	7004	
	약국	7005	
	동물병원	7007	
	유사의료업	7008	
	제약회사/의약품도매업체	7009	
	산후조리원	7010	
	제약/의료기타	7099	

* 기타 : 자사카드 발행 가맹점, 달러결제 가맹점, 자동이체 등 회원의 별도 확인없이 정기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가맹점, 카드사에서 승인불가로 선정한 일부 가맹점 등

참고 2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업종표

구분	분야별 (71)	업종명	비고
<p>울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 드 사용 업종</p>	<p>문화 (11)</p>	<p>영화관, 경기장, 서점, 공연장/전시장, 사진관, 음반판매점, 비디오 및 도서대여점, 문화/취미 기타, 문화센터, 화원, 독서실</p>	<p>인터넷 결제 제외</p>
	<p>이미용 (6)</p>	<p>미용원, 피부미용원, 화장품점, 미용재료, 미용기타, 찜질방/목욕탕/사우나,</p>	
	<p>스포츠레저 (13)</p>	<p>스포츠용품점, 놀이공원, 레저용품점, 레포트클럽, 종합스포츠센터, 요가, 테니스장, 볼링장, 스키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기타 레저업소, 자전거판매점</p>	
	<p>생활잡화 (19)</p>	<p>약세사리점, 귀금속점, 시계전문점, 안경점, 가방점, 제화점, 한복점, 일반신발점, 기성복점, 가발전문점, 아동 및 유아복점, 내의판매점, 침구·커튼·카페트점, 자석요, 완구점, 문방구점, 독서실, 애완동물, 동물병원</p>	
	<p>숙박음식 (12)</p>	<p>펜션/민박, 기타숙박업, 한식, 중식, 일식/생선회집, 양식, 뷔페, 패밀리 레스토랑, 일반음식점 기타, 제과점/ 아이스크림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p>	
	<p>지역특산 등 (9)</p>	<p>인삼판매점, 건강식품점, 신토불이매장, 농·수·축산물점, 농기계수리점, 농어업 용품, 농축수산물, 하나로마트, 하나로클럽</p>	
	<p>의료 (1)</p>	<p>의료기기 및 용품</p>	

※ 카드사용시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상이할 수도 있음
 - 카드사용시 주의 당부 → 업소가 국세청에 신고한 업종코드 인지 문의 후 사용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요령 / 민원인】

- ① 세무서 방문(신분증 지참)
- ② 읍면동 사무소
- ③ 홈텍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민원증명 클릭 → 소득금액증명원 클릭 → 로그인 → 신청하기 버튼
- ④ 정부 24(www.gov.kr)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인증서나 본인인증을 통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요령 / 민원인】

- ① 읍면동 사무소
- ②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인증서나 본인인증을 통해 발급
- ③ 무인민원발급기(읍면동 사무소, 은행 등 전국 4,449개소)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인식을 하면 발급 가능

※ 정부24(<http://www.gov.kr>)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및 운영시간 확인

참고 6

농업 업종 코드번호

○ 농업(축산업) : 코드번호 (012101 ~ 012203)

- 농·축산물의 직접생산과 연계된 제조, 판매, 서비스업종의 경우 개별 실태조사에 의해 인정여부 결정
- ⇒ 직접생산 종사여부, 사업운영규모 등을 조사하여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제조, 판매 등) 사업자등록인지 여부를 확인
 - ⇒ 농·축산물 생산이 아닌 사업운영에 주로 종사하는 경우 불인정

업종코드	상세분류
▶ 011000	▶ 식량,채소,화훼,과실,기타작물,시설작물(영농조합법인 등 법인사업자에 한함)
▶ 014300	▶ 축산서비스
▶ 020300	▶ 임업서비스
▶ 052200	▶ 어획물분리, 세척, 출하준비
▶ 052300	▶ 포획어류 냉동판매, 포획어류, 건조, 염장
▶ 151101 ~ 151102	▶ 도축가공 통조림
▶ 151200	▶ 냉동수산물, 어포, 젓갈류
▶ 151301 ~ 151302	▶ 과실채소가공 저장 (김치,통조림,과즙,감자분,채소절임, 꽃감)
▶ 152001 ~ 152002	▶ 낙농제조업
▶ 153101 ~ 153103	▶ 곡물도정(곡물가공), 정미소
▶ 153202 ~ 153300	▶ 당류제조, 동물사료
▶ 154501 ~ 154509	▶ 식품첨가물 (고추가루, 장류, 기타)
▶ 154801 ~ 154803	▶ 임가공업 (도정, 도축, 건조)
▶ 154901	▶ 녹차
▶ 154902	▶ 두부, 해조류
▶ 154903	▶ 음료용건강식품 (오리, 장어, 달팽이 엑기스)
▶ 154904	▶ 버섯재배
▶ 154909	▶ 콩나물재배,녹두재배
▶ 155101 ~ 155402	▶ 음료제조업 (과실주 등)
▶ 512111 ~ 512119	▶ 곡물, 종자 도매업
▶ 512131 ~ 512190	▶ 화초, 산동물, 관상어 도매업
▶ 512211 ~ 512236	▶ 음식료품 도매업 (법정도매시장 제외)
▶ 522011 ~ 522050	▶ 음식료품 소매업
▶ 522101 ~ 522109	▶ 건강식품 기타 음식료품 소매업
▶ 523987 ~ 523989	▶ 종자 생화 정원수 소매
▶ 525101 ~ 525102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